

보도 일시	2022. 6. 2.(목) 12:00 2022. 6. 3.(금) 조간	배포 일시	2022. 6. 2.(목) 12:00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사회적기업과	책임자	과 장 지영철 (044-202-7425)
		담당자	사무관 양재경 (044-202-7431)

##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디딤돌, 60억원 규모의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

- `11년 제1호 투자조합 결성 이후  
투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총 매출액 3배 이상 증가 -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총 60억 원(정부 출자 45억 원, 민간 출자 15억 원)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\*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\* 자금의 60% 이상을 투자 주목적 사업인 (예비)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의무 투자

○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(운용사: 임팩트스퀘어)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,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.

□ 고용노동부는 `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\*를 조성하여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하였다.

\* 총 468억 원의 정책자금은 정부예산 305억 원과 민간출자금 163억 원으로 구성

○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(585억원 → 1,843억원) 등의 성과를 거뒀다.

□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·생산하는 ㈜센시(SENSEE)는 `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

○ `17년에 3억 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`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, 매출액 3.2억 원의 기업에서 `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 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하였다.

□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<붙임>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개요

□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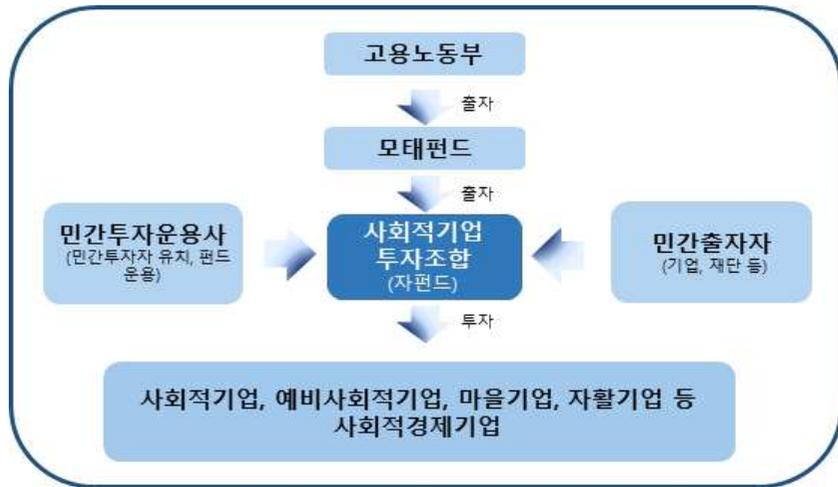
- (목적) 정부의 초기자금(Seed Money) 투입으로 사회적기업 투자시장 조성, 사회적경제기업이 이를 통해 R&D, 시설비 등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
- (법적 근거)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의2
- (규모) 468억원 조성(정부예산 305억원 + 민간출자금 163억원)

<투자조합별 결성시기 및 결성금액>

(단위: 억원)

구 분	제1호	제2호	제3호	제4호	제5호	제6호	제7호	제8호
결성일	'11.6.22.	'12.9.6.	'13.11.27.	'15.2.2.	'18.11.7.	'20.11.3.	'21.12.20.	'22.4.29.
결성금액 (고용부/민간)	42 (25/17)	40 (25/15)	60 (25/35)	40 (25/15)	108 (75/33)	58 (40/18)	60 (45/15)	60 (45/15)

○ 추진체계 및 절차



- ① (출자) 고용부 → 모태펀드에 출자금 납입
- ② (투자운용사 모집·선정) (주)한국벤처투자가 투자조합(자펀드)를 구성·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투자운용사를 선정
- ③ (투자조합(자펀드) 결성) '투자운용사의 투자자(조합원) 모집 → 조합원 총회 → 투자조합 등록' 절차를 거쳐 조합결성
  - \* 총 결성액의 25% 이상 민간출자금이 조성되어야 조합 결성 인정
- ④ (투자조합 운용) 투자운용사가 자금을 운용하며, 펀드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\*에 60% 이상 투자

\*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, ② 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, ③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 중 투자금 회수 전까지 사회적기업(예비포함)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, ④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('18년 추가), ⑤ 기타 투자대상선정 위원회에서 투자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등

- ⑤ (수익 등 배분) 수익 또는 손실된 회수금에 대하여는 매 사업연도 결산 후 90일 이내 및 조합 해산 시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
- ⑥ (투자조합 해산) 만기 도래 등 해산 사유 발생 → 해산계획 신고·수리 → 해산 및 청산 → 등록 말소
- ⑦ (회수금 재출자) 해산 후 회수된 금액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재출자

\* 제6호 투자조합부터 기존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을 활용 재출자하여 결성